

성폭력

충북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수사지원(피해자 진술조사, 진술녹화, 수사진행에 대한 상담)
- 상담지원(심리적 안정,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NGO 및 보호시설, 또는 쉼터 연계)
- 의료지원(상해치료, 진단서, 증거채취, 피해자 의료상담)
- 법률지원(국선변호인 선임,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구조기관 연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아름다운 성

섹슈얼리티는 섹스나 젠더라는 말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 섹스가 보통 생물학적인 성의 구별이나 직접적인 성행위를 뜻하고, 젠더가 남녀의 사회문화적 성적 차이를 뜻하는데 반해서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것의 전체를 의미한다. 즉 성적 욕망이나 심리, 성적 관행, 제도, 관습들을 모두 포함한다.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노출, 카메라 촬영,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배우자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한다'는 것은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강간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 2)

●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 공연음란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46조)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부모(계부모포함), 직계가족,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말하며 친족관계의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추행한 경우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특수강간

흥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디지털 성폭력

● 통신 매체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

● 음란물제작유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기타

● 스토킹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이다.

- 경범죄처벌법(지속적인 괴롭힘 제33조 1항 제41호)
-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로 처벌 가능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 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다.

성폭력 대처방안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주변에 알리기
-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버리기
-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기
- 나의 분노 인정하기
-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
-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 신고하기(112, 1366, 해바라기센터)
- 디지털성폭력피해시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상담을 통하여 삭제·소송 지원을 받기

●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 처벌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한다.

● 가해증거 수집하기

- SNS 문자 내용 : 채팅관련 주소 및 대화 내용
- DNA와 관련된 증거물

DNA와 관련된 증거물의 종류



물린자국



담배꽂초, 이쑤시개



휴지, 세탁의류



손톱



사건 당시 입은 옷, 속옷



치솔 등



콘돔



담요, 시트, 베개, 잠옷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병원(경찰서, 성폭력 상담소)에 가기
가해자의 정액, 음모 등의 증거를 채취하고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임신에 따른 검사와 응급 피임약 복용
 -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코팅 안 된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피해 당시 옷에 묻어 있는 정액이나 음모, 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코팅 안 된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진단서는 검사받은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히 적기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둡니다.
- ※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디지털(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핸드폰 문자, 채팅 내용을 보관하고, 관련사이트 PC 저장, 가해자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보관해 둡니다.

| 법적 절차 밟기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나,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대응(법적 절차)이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간,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 민사소송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 이외에도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수집 등,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므로 혼자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보다는 성폭력상담소나 1366, 충북해바라기센터의 지원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주변인이 해야 할 일

● 피해자의 상황 공감하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스스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도록 돕기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서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정보주기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여성청소년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후유증 극복하기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개인, 상황, 폭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함께 하는 당신의 정신건강 돌보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피해자와 함께 하다보면 피해자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되어 지원자도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사건화 되고 같이 진행하다 보면 더욱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지원자도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상처가 되고 이와 더불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불안이나 무력감, 우울, 분노 등 심리적인 후유증에서부터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적 후유증, 퇴사나 휴학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생존권위협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유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태도, 성폭력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잊는 것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덮어 둠으로써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상담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의사소통하기

의사소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하게 듣고 함께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성에 대해 금기와 억압이 많은 사회에서는 성이나 성적 욕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하기

성적 자기 결정권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책임성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이며, 따라서 그 누구라도 함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성교육 강화

일선에서 행하고 있는 실적위주나 형식적 성교육이 아닌 교육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선택과 책임,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 정체감과 성적 자기 결정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법적인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한 증거채취를 시행하며,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의료상담, 응급진료, 외래진료, 정신과진료 및 심리치료(연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성폭력 상담기관

성폭력 상담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지북동 355-17)	국번없이 1366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실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6번길 4 (봉명동 1411번지)	268-3008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15-2	224-9414
(사)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33-3, 3층	252-0966, 0968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263-2000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충주시 관아2길 22	1588-9191 847-9191
제천성폭력상담소	충북 제천시 내제로 5길 12	652-0049
충북여성가정(성)폭력상담소	음성읍 시장로 54 중앙빌딩 4층	873-3282
영동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영동읍 회동로 212-1	743-1366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202번길 66-1	아동학대신고 112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1577-1389
한스심리상담소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436 황이정승 2층	422-3004